

# 수탁시설 운영 규정

제정 2024.02.26. 규정 제2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정관 제4조 5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”수탁사업”이란 재단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와 체결한 위·수탁계약서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의미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재단에서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하며,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·수탁계약서와 각 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른다.

**제4조(시설장)** ① 시설장은 재단의 대표이사가 직접 임명한다.  
② 시설장을 포함한 시설의 정원은 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전보 및 인사발령)** ① 직원의 역량개발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재단의 대표이사는 수탁시설의 시설장에 대하여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.  
② 인사발령은 수행 자격요건 및 자질 등에 있어 적합자에 한하여 시행하며, 전보로 인한 처우조건 변경 등의 사항은 사전에 예고되어야 한다.

**제6조(인사관리)** ① 시설장의 채용, 포상, 상벌에 대한 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의하며,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른다. 단, 채용기준,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 
②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각 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른다.  
③ 시설장은 직원의 채용 시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며, 직원의 변동 및 채용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 
④ 시설 직원에 관한 인사관리 서류는 재단과 별도로 시설에서 비치, 관리해야 한다.

**제7조(시설의 수탁)** ① 재단의 수탁운영 시설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복지법령,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.

② 수탁이 최종 결정된 경우 재단 대표이사의 명의로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8조(시설 운영의 원칙)** ①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.

② 시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·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며 재단의 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,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변화, 재정투입의 효과, 사업내용의 적합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, 평가결과를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설 운영규정)** ① 시설의 운영 규정은 시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후,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②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 시 주무관청의 허가(인가) 또는 상위 기관의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.

**제10조(시설의 관리 운영)** ① 시설의 전반적인 사업운영은 시설장에게 위임하며 위임에 따른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다. 단, 중요한 안건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진행한다.

② 시설의 장은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조례, 규정, 개별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수립·변동, 결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④ 시설은 서비스제공, 복무, 회계, 문서, 그 밖에 시설의 관리 운영 전반을 시설 운영 규정 및 사무편람에 따라 시행하고 재단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재정지원)** 재단은 수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전출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지도·감독)**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수탁시설의 운영 전반 및 수탁재산에 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수탁시설은 재단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의무를 가지며, 재단이 요청하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.

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는 시설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시설장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